

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		
	전화번호					
자동차등 소유자	성명(상호 및 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	
	전화번호					
장치 표시	제조사	부착일자				
	형식모델	부착기간				
	제어장치 일련번호	음주측정부 일련번호				
자동차등 표시	차명	형식·연식				
	등록번호	차대번호				
장치 최초 등록일		장치소멸 발생일				
등록 말소 구분	☐ 민원인 말소신청 접수-통보용 ☐ 시행기관 강제말소 직권통보용					
말소사항	음주운전방지장치 기존 등록번호 : (장치부착 사용기간: ~)					
직권말소 사유	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☐ 고장·파손·분실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되어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☐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					
「도로교통법」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7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한국도로교통공단 직인						